

네그리의 삶정치론

1. 맑스의 구성력 이론과 삶정치론

가. 활동력과 생산

1) 생산적 삶: “생산적인 생활이란 곧 유적 생활이다. 그것은 생명을 산출하는 생활이다. 종의 전체적 성격, 곧 종의 유적 성격은 생명활동의 행위이다. 자유로운 의식을 갖고 있는 활동은 인간의 유로서의 성격이다. 생활 자체는 오로지 생활수단으로서만 존재한다”(경제학-철학초고, 61쪽)

2) 자연: “노동자는 자연 곧 감각적인 외부세계 없이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 자연은 노동자의 노동이 현실화되고 활동하는 질료이다. 노동은 그 질료로부터 그리고 그 질료를 매개로 하여 생산한다.”(경제학-철학초고, 57쪽)

3) 인간의 총괄성: “인간의 총괄성은 자연전체를 인간의 비유기적인 신체로 삼는 총괄성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자연 전체는 1. 직접적인 생활수단이기도 하고, [2.] 인간의 생명활동을 위한 물질·대상·도구이기도 하다. 자연은 인간의 비유기적 몸이다.”(경제학-철학초고, 61쪽)

나. 노동력

자본주의적으로 제약된 활동력의 역사적으로 특수한 규정

다. 노동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력 상품의 운동. 자본가 입장에서 노동력의 사용이며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력의 지출. 이것은 노동자의 기능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은 노동력 상품의 사용가치이다. 가치 실체로서의 노동에서는 노동의 유용형태 상의 차이, 즉 노동의 특이성들은 무시된다. 이 때 노동은 **자연에 대한 생산적 작용**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노동력의 지출**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자본을 넘어선 자본』에서 이진경은 이 점을 잘 말하고 있다.¹⁾ 하지만 이것은 노동을 가치화 과정으로만, 잉여가치화 계열에서만 고찰하는 것이다. 노동은 가치화 과정이면서 동시에 노동과정, 즉 사용가치 생산과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노동은 두 가지 측면의 ‘공통’을 갖는 것인가? 한편에서 시간에서 파악된 추상노동, 그리고 그것의 유용성, 즉 삶의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파악된 ‘특이성의 공통성’(삶의 생산과 재생산)으로서의 구체노동. 정치경제학자들에게 후자는 보이지 않거나 보이더라도 무시, 배제된다. 우리는 전자의 파악을 통해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파악을 통해서만 자본주의 하에서의 비노동들, 그림자 노동들과 노동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고 자본주의 비판을 넘어설 수 있는 구성의 존재론적 힘을 파악할 수 있다.

맑스는 유용노동에 대해 강조하기를 잊지 않으며²⁾ 사용가치가 자신의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해 마지 않는다. 유용노동은 이렇게 정의된다. “사용가

1) 『자본을 넘어선 자본』, 137쪽.

2) 앞의 바그너의 정치경제학 평주 관련 본문과 각주 참조.

치의 창조자로서의 노동, 유용노동으로서의 노동은 사회의 어떠한 형태로부터도 독립된 인간생존의 조건이며, 영원한 자연의 필연성이다. 즉 그것 없이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인간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³⁾

라. 임금노동

- 1) 한 시대의 인간 활동력 중의 일부는 자본관계 속에 편입되어 임금노동으로 배치된다.
- 2) “임금형태는 노동일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 지불노동과 부분노동으로 분할되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전체 노동이 지불노동으로 나타난다. … 임금노동에서는 화폐관계가 임금노동자의 무상노동을 은폐한다.”⁴⁾ 임금형태가 존재하는 이유: 1)판매구매 관계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교환관계 투영된다 2)노동력을 선대하고 노동의 실현 후에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노동력 가치가 노동에 지불한다는 인상을 준다 3)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주는 것은 유용노동이고 노동이 가치를 창조하는 일반요소라는 점에서 노동력이 다른 모든 상품과 구별된다는 점을 알 수 없게 한다.⁵⁾
- 3) 자본주의에서 임금노동은 여타의 비임금의 인간활동들 모두를 규율하는 헤게모니적 역할을 담당한다.

2. 삶정치론 이전 네그리의 국가론

자본과 국가 관계의 운동에 대한 맑스주의의 인식은, 자본에 의한 국가의 도구화(공동위원회)의 극대로부터 자본주의적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조직적 통합의 극대(이상적인 집합적 자본가)로 나아갔다. 밀리반드-폴란차스 논쟁은 맑스주의 국가이론의 변화를 알리는 한 계기이다. 밀리반드는 제도들의 기초를 자동화되고 능동적으로 된 정치적 차원으로 제시한다. 반면 폴란차스는 국가의 기반을 생산관계들이 아니라 시민사회라는 물신으로 파악한다.

68혁명은 맑스주의 국가이론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핵심 요소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분석은 자본주의적 적대의 본질적 계기인 상품들의 생산의 차원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1960년대 윌러와 노이쥬스는 국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지평의 초점을 분배에서 생산으로 옮긴다. 판저에리와 뜨른피도 분배에서 생산/순환으로의 관점 이동을 표현한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대응 속에서 국가는 자본의 집합적 대표자로, 사회적 자본의 자동적 관계의 대체물로, 그리고 완전한 의미에서 부르주아지의 당으로 된다는 생각을 정식화한다. 한스 위르겐 크랄은 잉여가치의 사회적 확장의 대표자가 되는 국가의 능력은 포함과 배제의 완전히 경직된 메커니즘의 기초 위에 확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클라우스 오페는 가치화의 과정들이 국가의 전체 기관을 통해 확장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68 이후에 국가는 자본주의적 가치화 과정의 정치적 매개를 달성한다는 생각이 확산된다. 위기의 재출현은 시장의 조절기능이 국가로 이전된 것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적 사회화는 착취관계의 사회화를 통제할 필요에 의해 움직인다는 요하힘 히르쉬의 주장이나 국가는 축적 기능과 합법화의 기능을 담당하며 이윤 메커니즘과 공공지출 메커니즘의 갈등이 곧 위기라는 제임스 오코너의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

3) 『자본론. 1』, 53쪽

4) 『자본론』 1권 하, 681쪽. 그렇다면 지불과 부분의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협동노동의 착취에서 임금형태가 은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적 공통체의 작용이 아니라 마치 개별 노동자의 작용, 즉 그들의 노동시간이 가치를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이다.

5) 『자본론』 1권 하, 682쪽.

야 한다.

네그리는 이렇게 발전되어온 국가론을 한 발 더 전진시키려 한다. 그는 국가이론이 도구적 국가독점 이론에서 계급투쟁에 자신을 개방한 구조적 국가이론으로 어렵게 발전되어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최근의 주기적 국면에서 자본주의의 위기의 폭력적 재출현과 더불어 구조적 국가이론의 단성성마저 위기에 빠진다고 본다. 그의 진전은 다음과 같은 생각들로 요약될 수 있다.

① 국가는 발전의 내부에 전면적으로 내재하며 그것의 내적 매개로 작용한다.

② 국가는, 가치화의 직접적 요소가 아닌 한에서, 자본주의적 관계들을 보증한다. 가치화와 합법화, 합법화를 통한 가치화, 정치적 가치화.

③ 국가의 새로운 개념화는 노동계급의 구성을 기술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거대한 노력에, 그리고 국가를 자본주의적 발전의 계획된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기초한다. 개혁주의적 매개의 역동적 기관으로서의 국가.

④ 자본의 개념은 국가의 형상 내부에 재구축되었다.

⑤ 가치의 개념은 더 이상 실체도 척도도 아니며 사회적 적대들을 매개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의 표현이다.

⑥ 권리국가는 공적 사적 권리들의 보증과 보호를 통해 그 권리를 민주적으로 재진유한다.

⑦ 명령의 병기들(기술자들, 경영자들 등)과 합의의 도구들(노동조합)을 통한 정치적 가치화의 지속. 프로그래밍의 새로운 기술들.

⑧ 직접적으로 이행의 지형 위에 있는 투쟁, 코뮌리즘을 위한 투쟁, 국가의 절멸을 위한 투쟁이 아닌 노동자들의 투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⑨ 집합적 자본가로서의 국가는 가치법칙에 따라 착취를 관리하는 자이며 착취를 그에 따라 계획하는 자이다.

⑩ 국가의 계획된 지배의 합리성은 적대적 힘의 억제불가능한 출현에 기인하며, 지배의 목표는 통제와 파괴의 수행으로 된다.

3. 네그리의 삶정치론에서 활력, 권력, 폭력의 문제

네그리에게서 폭력의 문제는 폭력 자체에서 직접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활력으로부터 발생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그에게서 권력이 활력으로부터 발생론적으로 다루어지는 것과 동일하다. 네그리는 폭력의 문제를 국가폭력에 대한 대항의 차원에서 사고하기 시작했지만 최근 네그리의 폭력론은 제국폭력에 대한 대항의 차원에서 사고된다. 그 사고의 핵심에 삶권력 대 삶능력의 대립문제가 놓여 있다. 그래서 먼저 삶권력과 삶능력의 대립이라는 구도 속에서 정의된 최근 네그리의 폭력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삶권력’은 탈근대에 가능해진 권력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철저히 역사적인 개념이다. 근대의 권력은 삶권력이기 전에 ‘국가권력’이었고, 중세와 고대의 권력은 그것과 또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근대적 삶권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에서 삶권력으로서의 이행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국가권력에서 삶권력으로

국가권력은 위로부터 노동을 생산하고 조직하는 권력이다. 시초축적의 역사는 노동의 탄

생과 발전이 국가폭력에 의해 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농민들은 토지에서 폭력적으로 추방되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을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노동할 수밖에 없는 도시의 프롤레타리아로 되었다. 근대국가는, 푸코의 표현을 원용하면, ‘노동하게 만들면서 살게 내버려두는 권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노동을 매개로 하는 것이었다. 노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권력에 의해 노동시간을 삶시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이다.

노동사회로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조건은 더 많은 삶이 노동으로 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의 영역은 점점 삶의 물질적 생산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비물질적 생산영역에까지 확장된다. 심지어 소비활동조차도 노동활동과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결과적으로 탈근대적 상황에서는 삶 전체가 노동으로 편입되어 삶과 노동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삶의 모든 시간이 (포섭의 방식뿐만 아니라 배제의 방식을 통해) 노동활동으로 편입되면서 삶시간과 노동시간의 구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리하여 자본은 불가피하게 삶 자체와 대면하게 되고 노동시간에 대한 착취보다 삶 자체에 대한 수탈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도록 된다.

이처럼 삶시간으로부터 노동시간을 분절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노동시간의 조직화에 기초했던 근대적 주권형태, 즉 국가형태가 위기에 직면하고 새로운 주권형태가 모색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보편적 삶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전 지구적 주권형태, 즉 제국이 모색된다. 그것은 사람들을 ‘쉽 없이 살게 함으로써 수탈하는 권력’이다. 이것이 삶권력이 탄생하는 역사적 맥락이다.

삶능력

삶권력은 삶시간과 직접 대면한다. 노동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이었으며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으로의 분절이 가능한 시간이었다. 그것은 측정 가능했고 또 측정되어야 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삶시간은 모든 존재들이 탄생하고 생산하고 교통하기를 반복하는 영원의 시간이고 측정 불가능한 시간, 척도 외부의 시간이다. 나아가 그것은 권력(pouvoir)의 척도 너머로 움직이는 창조적 능력(puissance)으로서의 활력이다. 근대국가와 자본은 노동시간에 대한 가치화의 체제(가치법칙)를 확립함으로써 삶활력(Lebenstätigkeit)으로부터 노동력(Arbeitskräfte)을 분절했다. 근대 자본은 이처럼 삶에서 노동을 분절하는 것에 의존했다.

이제 삶시간 전체의 자본에로의 포섭은 한편에서는 자본의 권력의 증대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이 자신의 척도권력(가치법칙)을 잃고 높으로 빠져듦을 의미한다. 그래서 탈근대적 삶권력은 직접적으로 삶활력을 자신의 축적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사활을 걸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금융화, 유연화, 정보화는 삶을 축적기반으로 확보하기 위한 자본의 전술들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시도들 속에서 권력의 삶에 대한 의존성은 좀더 선명히 드러난다. 네그리가 오빠라이스모 시기 이후 권력에 사로잡힌 ‘과학적’ 시선들을 비판하면서 일관되게 제기해 온 노동의 우선성, 저항의 우선성 등의 테제는 바로 삶능력의 이 우선성에 대한 단언이다. 척도 너머의 삶능력을 지배하기 위해 권력이 선택하는 것은 명령의 길, 폭력의 길이다. 삶권력의 원천은 삶이고 그래서 삶권력은 살게 해야 한다. 하지만 삶권력에게는 살게 할 힘이 없다. 왜냐하면 삶권력은 축적된 권력이고 축적되고자 하는 권력인데 축적은 산 것이 삶의 영원한 시간에서 벗어나 죽는 과정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권력은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국의 삶권력은 살

게 하기 위해 죽이기를 반복한다. 이런 의미에서 삶권력은 살게 해야만 하나 죽게 하기 외에는 할 수 없는 살아 있는 모순이다.

두 유형의 폭력

삶권력의 시대가 예외권력에 기초한 보편적 전쟁과 죽음의 상태, 비상적 예외의 시대(아감벤)로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테러에 대한 전쟁’은 이 보편전쟁을 알리는 암구호이다. 명령으로 삶시간과 대면하는 삶권력은 삶능력 앞에서 공포 이외의 다른 것을 느낄 수 없다. 삶권력은 척도 바깥에서 척도 너머로 움직이는 창조와 약동의 삶시간을 테러로 받아 들인다. 군사적 전쟁, 정치적 치안, 경제적 박탈, 정보적 감시 등은 삶능력에 대한 전쟁이 수행되는 폭력적 방식들이다. 삶권력은 삶능력을 배태하고 출산할 산모가 아니라 삶능력의 피를 빼는 흡혈귀이다. 영구전쟁을 가져오는 제국이 드러내는 안보불안은 삶권력이 삶능력에 과잉면역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역결핍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네그리는 ‘전쟁에 대항하는 전쟁’을 삶능력의 노선으로 제시한다. 삶능력은 오늘날 다중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다중의 삶능력은 자신이 제국과 대칭적인 강력한 폭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며 비폭력주의를 통해 제국의 폭력독점을 (고발하되 실천적으로는) 묵인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삶능력은 무엇보다 창조력이며 삶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구성력이다. 이 힘은 권력과 삶이 아니라 특이한 다중들이 서로 반려중(해러웨이)으로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상보적 면역체계의 패러다임(에스포시또)도 삶과 권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보다는 특이한 다중들의 협력적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적 구성의 과학(매디슨)을 혁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삶능력의 이 민주주의적 구성과정은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를 반복하는 삶권력의 폭력기관들을 무력화하거나 해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레닌). 그러나 이것을 위해 삶능력이 민중의 권력을 위해 행사되었던 대항폭력과 같은 것으로 될 필요는 없다. 대항폭력은 주권이 행사하는 폭력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예측시킬 다른 주권을 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중의 삶능력이 행사하는 폭력은 삶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다중의 탈주를 용이하게 하며 특이한 존재들 사이의 소통을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협력을 생산하는 힘’이어야 할 것이다. 네그리에게서 ‘제한권력’(pouvoir constituant)이라는 사법적 개념은 기존의 권력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협력을 생산하는 삶능력의 이 두 측면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제한권력

사법이론에서 제한권력은 정치권력의 변화나 행사와 관련된 근본적 규칙을 설립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그것은 주어진 국가의 새로운 헌법을 창출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 헌법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력이 제정(된) 권력(pouvoir constitué)이며 헌법에 기초하여 주어진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주어진 헌법의 틀 내에서 헌법의 필요한 개정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이다. 안토니오 네그리는 제한권력이라는 사법적 개념을 기존의 질서 속에서 또 그것에 대항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창안할 수 있는 다중의 역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 네그리에게서 그것은 낡은 질서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법적 규약들과 새로운 삶의 형식들을 부과하는 권력으로 이해된다. 일반적 사법이론에서는 제한권력이 권력의 공백기에 나타나지만 네그리의 제한권력은 기존 권력이 온존하고 있을 때에도 작동하고 있다. 사법이론에서 ‘constituent’는 ‘제한적=헌법제정적’의 의미를 갖지만 네그리에게서 이것은 제한보다 더 포

괄적인 의미로 즉, 사회적 노동의 협력적이고 소통적인 네트워크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지칭하는 사회철학적이고 정치철학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까지 사용된다. 나아가 그것은 존재론적 역능과 활력을 지칭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된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제한권력은 ‘구성권력’ 혹은 ‘구성력’ 등으로도 번역될 만큼 폭넓은 의미를 갖게 된다. 본문의 문맥에서 제한권력이 삶능력에 상응한다면, 제정권력은 삶권력에 상응한다. 안토니오 네그리는 *Pouvoir Constituant*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마키아벨리, 해링턴, 루소, 맑스, 레닌 등의 제한권력 개념을 상세히 분석한 바 있다.

4. 네그리의 코뮌리즘론과 삶정치적 요구들

코뮌리즘을 사회주의의 연속적 발전으로 사고해온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학은 가치화와 가치실현을 이론화했다. ‘가치실현’에서 ‘능력실현’(‘특이적 공통성 및 공통적 특이성’의 실현)으로의 관점의 역전이 필요하다. 점차 비물질적 노동이 헤게모니적인 것으로 전화하는 사회적 노동의 능력 그 자체가 기초적인 코뮌리즘의 형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전 지구적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 코뮌리즘 운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노동에 대한 수탈로서의 금융적 축적을 사회적 노동의 내재적인 자기실현으로 대체해야 하며 제국적 주권의 네트워크를 아래로부터 다중의 활력의 네트워크로 대체해야 한다. 전 지구적 전쟁에 반대하는 다중의 전쟁을 조직해야 한다. 『제국』에서 네그리와 하트는 이 전쟁이 세 가지 정치적 요구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제안들이다. 그런데 이 요구들이 부르주아 사회의 한계 내에서 제기되는 개량주의적 요구들에 불과한 것으로, 심지어는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평가되곤 했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도달할 미래로서의 코뮌리즘의 상을 기준으로 현실 운동에 대해 객관적 척도를 제시하는 근대적 코뮌리즘관의 간접작용이다. 어떤 정치적 요구는 현실 외부에 독립된 이상에 따라서가 아니라 현존하는 현실을 타개할 잠재력(내재적 코뮌리즘)의 카이로스적 실현을 조성할 힘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구를 우리 시대 코뮌리즘의 삶정치적 요구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요구는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절박한 문제들(예컨대 이주노동자 문제, 비정규직과 실업자 문제, 지적재산권과 퍼블릭 액세스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1) 다중의 전 지구적 자유이동의 보장: 전지구적-보편적 시민권

전 지구적 시민권에 대한 요구는 유토피아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법적 지위가 최근의 경제적 변화에 발맞추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유동성을, 국경을 넘는 이주를 요구한 것은 자본이었다. 중심지역들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은 주변지역들로부터의 노동자들의 유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현재의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엄연한 사실이 사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모든 노동자들이 그 출신지역을 불문하고 온전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은 사라져야 한다. 이주노동은 무조건 합법화되어야 한다. 실상 이 정치적 요구는, 자본을 창출하는 노동자에게 시민권으로 보상하는 근대의 기본적인 헌법 원칙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 요구는 탈근대적 제국의 조건에 비추어 더 일반적이고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주민들에 대한 법적 인정에 대한 요구는 이동 자체에 대한 다중의 자기통제권에 대한 요

구로 발전할 수 있다. 그 누구든지 이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언제,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이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가말로 전 지구적 시민권을 위한 요구의 궁극지점이다. 전 지구적 시민권은 공간에 대한 통제를 재(再)전유하고 새로운 지도작성법을 창안해 나가는 다중의 힘이다.

2) 보장소득(사회적 임금권)

오늘날 일반적인 것은 삶정치적 생산이다. 고용관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삶의 생산과 재생산에 참여하며 바로 이것으로서 삶정치적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임금관계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고용되었든 아니든 그 누구든지 삶을 위한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 보장소득은 가족 임금과 다르다. 가족 임금은 성분할의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남성 노동자의 생산적 노동에 지불된 임금이 그의 아내와 가족들의 재생산적 노동에 대해서도 지불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가족 임금은 가족에 대한 통제권을 남성 임금노동자의 손에 쥐어주며, 어떤 노동이 생산적이고 어떤 노동이 비생산적인가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영속화한다. 오늘날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혹은 모든 노동이 생산적 관계 속에 편입되면서 가족 임금의 적합성도 사라진다. 사회적 임금은 가족을 넘어서 다중 전체로 확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고용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체 다중이 생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총체적 생산은 삶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등한 노동에 동등한 임금 지불”이라는 슬로건도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노동이 개별적으로 측정되고 비교되어 동등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임금에 대한 요구는 삶의 생산과 재생산에 기능적인(이것은 오늘날 자본의 생산과 재생산에 동시에 기능적이다) 모든 활동이 인정되어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민권이 모두에게 확대된다면 이 보장소득은 사회의 성원 모두의 정당한 소득으로서의 시민권 소득이 될 것이다.

케인즈주의에서 사회적 임금의 이념은 노동협력의 집합적 구조에 대한 인식에 기초했다기보다 빈민에 대한 제한된 보조의 차원에서 취급되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고용되었건 고용되지 않았건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이 분배되는 사회적 평균임금체계보다 더 논리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임금체제는 도덕적으로 올바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이나 부기의 관점에서도 정확하다. 사회화된 노동자의 세계경제에서 노동은 공통적 기초 위에서 발생한다. 화폐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추상적이고 집합적인 노동의 단위를 재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보장소득은 다중을 구획화하는 다양한 차별(고용/비고용, 여성/남성 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보장소득은 노동을 욕구로 전환시킴으로써 노동을 가치생산 기제가 아닌 욕망생산의 기제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3) 지식, 정보, 소통, 정동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통제(재전유권)

탈근대 사회에서 소통은 생산의 날줄과 씨줄로 기능한다. 언어적 협력이 생산적 몸의 구조로 되면서 언어감각, 의미, 소통의 네트워크들에 대한 통제의 문제가 점점 더 정치투쟁의 중심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언어감각의 획득이 노동력의 핵심 문제로 되면서 사회적 투쟁은 소통의 네트워크를 포획하려 하는 자본에 대항하는 것으로 배치된다. 어떻게 감각과 의미가 새로운 방향을 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지식이 언어적 행동이 되어야 하며, 철학은 지식의 현실적 재전유가 되어야 한다. 지식과 소통이 투쟁을 통하여 삶을 구성하여야 한다.

모든 언어와 소통의 네트워크에는 기계들의 체계가 상응한다. 기계들은 생산의 특수한 체

계 속에 배치되어, 어떤 실천들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실천들을 금지시키는 삶정치적 도구들로 기능한다. 기계의 비자본주의적 사용의 가능성은 기계를 인간에게 종속시킴으로써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중 스스로가 독특한 유형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들과 비자본주의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개별적 힘들이 서로 만나 새로운 공명을 이루고 너도 나도 아닌 '우리'로서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야 한다. 주체들간의 만남과 짝짓기를 통해 다중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생성은 오로지 다중의 경험과 실험에 의존한다.

코뮤니즘의 전통적 이상은 직접적 생산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재전유였다. 이제 이 생각은 삶정치적 수준에서 재정의되어야 한다. 비물질적이고 삶정치적인 생산의 맥락에서는 이 전통적인 요구가 새로운 모습을 띤다. 다중은 생산기계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생산기계로서 생산수단들을 자신들의 몸과 마음에 통합한다. 기계되기가 다중의 삶의 방식이다. 재전유란 삶정치적 생산의 주된 수단들인 지식, 정보, 소통, 정동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통제를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다중이 통합적 기계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다중의 자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생산수단의 재전유는 다중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집합적이고 민주적인 힘을 갖춤으로써 완성된다.